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1. 10. 20.(수) 10:00

제23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안양천 명소화 · 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 
동의안  
(도시안전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『안양천 명소화·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』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46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0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0. 8.

## 2. 제안이유

서울-경기권역 8개 지자체의 안양천 명소화·고도화 협약에 따라 안양천의 국가(지방)정원 등록 및 서남권 랜드마크 조성 등 안양천 명소화·고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향후 안양천 유역이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·휴식 공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목적(안 제2조)

- 1) 안양천 명소화·고도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향후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등록되도록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### 나. 구성 및 임원(안 제3조~제4조)

- 1) 협의회는 안양천 서울권역인 금천구청장·구로구청장·영등포구청장·양천구청장과 안양천 경기권역인 광명시장·안양시장·군포시장·의왕시장을 위원으로 한다.
- 2)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을 둔다.

### 다. 기능(안 제9조)

- 1) 안양천 명소화·고도화사업 협약서 내용 이행에 관한 사항

- 2) 안양천 국가정원 등록 추진에 관한 사항
- 3) 중앙정부 등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
- 4)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
- 5)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- 6)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

**라. 회의 및 의결(안 제10~11조)**

- 1)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1년마다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2)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**마. 의안 제출(안 제10조)**

- 1) 위원은 협의안을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, 회장은 안건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무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한다.

**바. 결의사항의 처리(안 제12조)**

- 1) 협의회에서 합의,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.

**사. 사무처리(안 제14조)**

- 1) 협의회 회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회장이 속한 시·구의 업무 담당 팀장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아.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(안 제16조)**

- 1)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
- 2)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구성
- 3)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.
- 4)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- 5) 실무협의회는 당년도 논의안건을 감안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관계자를 협의회 주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 참석 통지한다.

**자. 재원(안 제17조)**

- 1)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.

**4. 참고사항**

**가. 관계법령**

- 1)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
- 2)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)

**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**

**다. 합의기관 : 서울-경기 8개 지자체**

- 금천구, 구로구, 영등포구, 양천구, 광명시, 안양시, 군포시, 의왕시

**5. 검토의견**

**가. 동의안 제안 이유**

본 동의안은 서울-경기권역 8개 지자체가 안양천 명소화·고도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**나. 주요 내용**

본 안건의 규약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·경기 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음.

#### 다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이며, 안양천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, 체계적인 하천관리 방향의 설정 및 효율성 있는 하천관리에 그 목적이 있으며, 규약의 목적과 주요 내용 등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관련 법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